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한국문화인류학회

(경유)

제목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관변경 허가 통보

1.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관변경 신청(2017.10.31.)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청한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변경 허가를 통보하오니,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법인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요 변경내용

- 설립목적, 회원자격(정회원, 준회원), 회장선출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개정 정관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무관 이재애 행정사무관 유지열 문화인문정신 전결 2017. 11. 13.

협조자 정책과장 김근호

시행 문화인문정신정책과-848 (2017. 11. 13.)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어진동) / http://www.mcst.go.kr

전화번호 044-203-2514 팩스번호 044-203-3467 / jaelee@korea.kr / 비공개(7)

사단법인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문화인류학회(The Korean Society for Cultural Anthropology)"라 칭한다.

제2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한국 인류학의 학술적 발전과 실천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 문화간 상호 이해를 촉진하며,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연구 및 연구 발표회 개최
2. 회지 및 기타 도서 간행
3. 문화정책 개발 및 제안
4. 국내외 관계 학회와의 교류
5. 기타 본 회의 목적과 관계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소정의 입회원서와 회비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회비 및 기타 회원 자격에 관련된 구체적 요건은 이사회의 내규로 정한다).

1. 정회원은 석사학위 이상 혹은 그에 상당하는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인류학 관련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준회원은 학사학위 이상 혹은 그에 상당하는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인류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3.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기관으로 한다.
4. 특별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공이 크거나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5. 모든 회원은 이사회가 정한 절차를 밟아 자격을 획득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가할 권리(단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가진다).
2. 본 회의 연구발표회와 사업에 참가할 권리.
3. 회지 및 기타 본 회 간행물의 수령 및 논문발표의 권리.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의 준수
2.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서면으로 회장에게 탈퇴의사를 통지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징계)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이익이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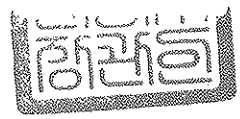

제10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5인
3. 이사 20인 이내
4. 감사 2인
5. 편집위원장 1인
6. 기타 학회가 필요로 하는 임원

제11조. (회장의 선출) 회장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되며, 임기시작 6개월 전까지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1.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2. 이사는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3.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나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사장을 겸하여 본 회를 대표하여 본 회의 사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의 중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학회지 발간 업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①호 및 제②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④ 제③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본 회와 회장은 그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6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기구;

제17조.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4. 편집위원회
5. 연구윤리위원회
6. 분과위원회

제18조. (총회)

1.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본회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2.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3.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5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거나 제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총회는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기타 학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5.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이사회는 총무, 편집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 분과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회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윤리규정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중요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학회 중요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심의를 행한다.

제21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본 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문화인류학』의 원고심사, 편집,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22조. (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회의 연구윤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본 회의 연구윤리 규정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규정의 변경 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3조. (분과위원회)
1. 본 회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종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3.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재정;

제24조. (재산)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본 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4. 기부금은 보통재산에 포함한다.

제24조-1. (기부금 사용)
1.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만 사용할 수 있고 특정인을 직접 수혜자로 할 수 없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지출을 제외한 기부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 목적 사업인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며,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지출을 제외한 기부금의 나머지 100분의 20은 본 회의 운영 보조비로 사용한다.

제24조-2. (기부금 공개)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koanthro.jams.or.kr) 을 통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25조. (경비의 지출) 본 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26조. (재산의 관리) 본 회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27조. (예산 및 결산)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2.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3.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사무국;

제28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 (법인해산)

1.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신설)

제30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